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6. 2(목) 총 4매(본문 4)	
담당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	담당자	•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효정, 팀장 김동현, 사무관 황현주 • ☎ (044)201-3224, 3235, 4816	
보도일시	2016년 6월 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드론산업 활성화 등 '선제적 규제정비' 입법예고...7월 시행

### -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정비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'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' 및 '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' 후속조치로,
    -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  - 이는 경제·사회 변화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,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,
    - 입법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빨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.
    - 이번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- \* 후속조치 관련 시행령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괄 정비 중(5.30~6.9 입법예고)

□ 주요 규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항공법 시행규칙

- 농업·촬영·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·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**모든 분야로 확대**
-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,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(자체 12kg 이하 →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)하고,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**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 허용**
-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, 야간 비행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
- 소형 드론(25kg이하)을 활용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

\* (현재) 법인 30백만원, 개인 45백만원 → (개선) 자본금 면제(25kg 이하 소형 드론)

②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
-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**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하여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**
-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킬로미터인 자동명령조향 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

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-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50미터 이격하여야 하나, 이격거리 규정이 없었던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관광숙박시설을 증·개축하기 위해 **2018년 12월 31일까지**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격 거리기준 적용을 면제

####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
-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

####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-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

\* 전국 단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은 현재와 같이 50대 이상으로 유지

#### 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-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 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사망·질병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, 직접운송\*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\*\*의 운송횟수 기준(96회)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

\* 직접운송 의무제 :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,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(1차 50%이상, 2차 100%)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

\*\*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로서, 연간 96회 이상 자사 차량처럼 정기 배차 가능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

#### ⑦ 지하수법 시행규칙

- 지하수 개발·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·이용 시공업, 지하수영향 조사기관,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

\* (개발·이용 허가) 신규 3만원·연장 1.7만원, (업등록) 신규 5만원·변경 3만원

□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\* 의견제출처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
(전화 : 044-201-3233, 팩스 : 044-201-5517)

※ 담당부서 및 연락처

시행규칙	담당부서 및 연락처
① 항공법 시행규칙	첨단항공과 위은환 사무관(☎044-201-4253) 항공기술과 임경택 사무관(☎044-201-4286)
②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	첨단자동차기술과 성시현 사무관(☎044-201-3853)
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도시정책과 박용선 사무관(☎044-201-3708)
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	녹색도시과 손동권 서기관(☎044-201-3745)
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	신교통개발과 김상민 사무관(☎044-201-3820)
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	물류산업과 류경진 사무관(☎044-201-4018)
⑦ 지하수법 시행규칙	수자원정책과 유재욱 사무관(☎044-201-3599)